


2022 Vol. 14

국외에서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 대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K I C J
I N S T I T U T E
P A P E R

 전현욱 연구위원 | 법학 박사, sinawe@kicj.re.kr

발행일 2022년 11월 9일 발행인 하태훈 발행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주요키워드

국외 범죄피해 지원, 재외국민 보호, 영사조력법, 범죄피해구조금, 범죄피해자

*관련보고서: 전현욱 외 2명(2021.12.), 국외 범죄피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생명·신체에 대한 범죄피해를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연구 목적
 - 해외출국자수 증가 등으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상황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조력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주요 연구 내용
 -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특수한 상황과 필요가 지원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현지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나 법률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실효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연구
 - 범죄피해지원 선진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와 독일의 관련 제도 및 실무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 정책 제언
 - 영사콜센터 등을 통한 긴급신고 및 통역지원이 강화 되어야 한다.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2조는 영사조력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범죄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재외공관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은 재외국민에 대하여 후견적 개입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 근무자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 경찰 해외 주재관이 확대되어야 한다.
 - 귀국 후에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국외 범죄피해자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

01 |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논의 배경

- 해외출국자수 증가 등으로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수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늘어나면서 우리 교민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을 수반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살인미수 등 중범죄 피해 사례도 발생 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국외 범죄피해에 대한 조력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하고자 함



수요자 중심의 피해자 지원

- 범죄피해자가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를 실효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즉 피해자의 관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분노 및 무력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함
- 국외 범죄피해자는 기초적인 사회시스템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겪게 되는 어려움의 내용이나 정도가 국내의 경우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으므로, 제공해야 하는 지원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접근 방향이 달라야 함
- 사회보장적 생존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지원은 어려움의 크기가 클수록 더욱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

- 긴급신고 - 현지의 긴급구조 체계에 대한 부지, 신고를 위한 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있음
- 언어 소통 - 의료·법률 서비스 이용은 일상적 의사소통 수준을 넘는 외국어 능력이 필요
- 의료체계 - 중상해 피해자가 현지 의료(지원)체계 관련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 기초적인 생존 배려 - 사회문화적 지식 부족이나 범죄 피해 후의 비이성적인 두려움 등으로 식료품 등 생존을 위한 필수품을 확보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 현지의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 - 피해자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제도의 존재 자체를 알기도 어렵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등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는 더 어려움
- 민·형사절차 참여 - 초동수사부터 형사재판절차, 민사상 배상절차 등 현지의 법적 절차를 알고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함
- 귀국 후의 지원 - 국내 지원체계와의 유기적 연계, 현지와의 소통 지원 필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방안

- 헌법상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국가배상적 사회보상청구권이면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한 국민에 대한 사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생존권적 청구권이므로 국외 범죄피해에 대하여도 인정될 수 있음
- 속인주의에 따라 내국민의 국외범은 처벌하면서 피해자 지원은 속지주의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외범에게도 부과되는 벌금을 재원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도 집행되는 것이 일관적이므로, 실무적 어려움을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
-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사실 확정의 어려움, 지원 대상 범위와 한계 설정,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곤란, 구조금 지급 지연 가능성 등의 문제에 대한 실무적 대안 검토

금전 이외의 피해자 지원제도 적용 확대 가능성

- 신변보호조치 중 피해자 보호시설 및 임시숙소, 비상연락망 구축 등의 지원은 현지 공관이 제공 가능하며 신변경호나 순찰강화도 해당국의 법집행기관과의 협력 상황에 따라 지원 방안 모색 가능
- ‘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법률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형사절차상 각종 피해자 보호 절차 및 배상명령, 경우에 따라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 법률적 지원 제공
- 현지 의료체계 이용 지원 및 국내의 정신의학 전문가와의 상담지원 등 가능
- 수익자 부담 원칙, 가해자에 대한 구상, 범죄피해구조금 등의 재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범죄피해지원 선진국의 국외 범죄피해 지원제도

- 캐나다는 2007년부터 범죄피해자기금을 통하여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재정지원을 제공하며, 범죄피해지원단체는 국외 범죄피해도 지원
-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 국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각 주의 사정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다름. 테러인 경우 연방정부가 의료비용 및 손실보상, 장례비 등 지원
- 독일은 독일 국민은 물론 3년 이상 독일에서 체류한 외국인이 독일 이외의 영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도 지원하나, 독일 내의 범죄피해와 달리 사회보장적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음

03 | 정책제언

영사콜센터 역할 강화

- 영사콜센터 등을 통한 긴급신고 및 통역지원 강화
-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콜센터에 신고하면 가능한 경우 영사콜센터에서 현지 응급구조기관 및 수사기관과 직접 소통하여 실효적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응급의료 및 초동수사 과정에서 통역 서비스 제공까지 연계되어야 함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은 영사조력의 하한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2조의 내용은 범죄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이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으로 해석되어야 함
- 법률에 해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점이 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결정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됨

후견적 개입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의 적시 제공

- 범죄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현지의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중대한 상해를 입은 재외국민에게 후견적 개입을 포함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추가로 제공
- 재외공관은 현지 수사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사실의 신속한 인지가능성 확보
-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사건 발생시 피해의 경중에 따라 이에 관한 현지의 형사사법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의 지원 체계가 구축 되어야 함
- 현장 통역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생필품 조달 지원, 귀국을 위한 항공권 확보 및 귀국 여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후견적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 지원 비용은 재외공관이 부담하고 차후 구상하거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보전해야 하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충당하거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재외공관의 지원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

- 재외공관 근무자의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과 전문성 강화
-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범죄피해자의 특성 및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상세한 직무교육 정례화
- 범죄피해자 지원 역량을 갖춘 영사협력원의 위촉 확대
- 민형사상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또는 현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실효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공관별로 현지 자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해야 함
- 법적 책임이나 민원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 담당자의 면책 또는 책임제한 규정 입법 고려

경찰 해외 주재관 확대

- 경찰 해외 주재관은 현지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소통창구
-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 경찰 해외 주재관의 역할이 미칠 수 있도록 파견 경찰 인력 대폭 증원

귀국 후 지원 연계

- 귀국 후에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함
- 외교부·법무부간 협업행정체계를 구축, 귀국시 국내 범죄피해 지원 업무와 자동 연계되어야 함
- 귀국 후에도 현지의 형사절차 및 범죄피해지원 절차 등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을 통한 지원 제공
- 필요시 해당국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여비 지원 가능성 검토
-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간의 국제 네트워크 활용 방안 모색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국외 범죄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확대
- 사회보장적 청구권이라는 측면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국내의 경우와 차등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
- 재원은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하거나 필요시 재외국민 지원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